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이 포함되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로 변경〉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3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참고사항	2
V . 검토의견	3
1.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이 포함되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로 변경 (안 제15조의2)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소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30.

다. 회 부 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 및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함(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Ⅳ.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V. 검토의견

1. 기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기후인지 결산서 제출(예산서 작성·제출 및 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신설) - 기후인지 기금결산서 제출(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및 기금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신설)

개정안은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432호)¹⁾의 의결을 전제로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를 예산의 원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32호)

현 행	개 정 안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 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노력 규정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 <신 설> -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로 변경 - 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반영 노력 규정 -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후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 온실가스 배출증가 예상사업의 경우 기후인지 예산서에 감축방안 포함 -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 분석하는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 기후인지 결산서 작성 - 기후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칙에 명시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작성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기금결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라 함)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기금결산서(이하 “기후인지 예·결산서”라 함)로 변경하고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 분석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축방안을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배출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포함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축방안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나,

2021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탄소감축인지, 기후변화인지 등 다양한 명칭이 거론되었으나, 정량적 성과평가 가능성, 사업범위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측면을 감안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는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부터 작성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거친 후 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7. (생략) 7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 8. ~ 12. (생략)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2. (생략) 2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산서 3. (생략) ③·④ (생략)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 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u>온실가 스감축인지</u>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 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 2호의2에 따른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 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기후인지</u> ----- 8. ~ 12.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2의2. <u>기후인지</u>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u>기후인</u> <u>지</u> ----- ----- ----- <u>기후인지</u> ----- ----- -----.

문의처

02)6788-5153

